

외국인 교원 임용 규정

개정 2019.04.17. 개정 2021.02.22. 개정 2022.04.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외국인 교원 임용 및 대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대상)

외국인 교원은 외국어회화 등 담당과목이나 강의내용이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거나 내국인보다 교육의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임용자격)

- ① 외국인 교원은 해당과목 전공자로 석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내체류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자로 한다.<개정 2012.05.29.>
- ② <삭제 2012.05.29.>
- ③ 교양(영어회화) 외국인 교원은 해당과목 전공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내체류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1.24.>

제4조 (임용직급)

외국인 교원은 초빙교원으로 임용한다. 단, 경력, 학위, 연구 실적 등에 따라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07.16., 2019.04.17>

제5조 (임용절차)

1. 외국인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는 계열(학과)의 임용사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9.04.17., 2022.04.04.>
2. 임용계약은 고용계약서(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되 대학의 운영여건에 따라 계약내용은 일부 변동 될 수 있다.<신설 2017.1.24.><개정 2021.02.22.>

제6조 (임용결정)

외국인 교원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조의 2(재계약)<신설 2017.01.24.>

1. 재계약 대상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계약한다.
2. 임용권자는 외국인 전임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용권자는 임용결과를 2개월전까지 해당 외국인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 3(평가방법 및 재계약거부)<전문개정 2017.11.28.><개정 2021.02.22.>

- ①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1. 교원인사규정 제4장 재임용 제22조(절차) 조건에 미 충족 하는 경우
 2. 심사평정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1] 재임용 및 재계약대상자 심사평정표에 의한다.
- ② 초빙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1. 심사평정은 초빙교원 등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초빙교원 재계약 심사평정표에 의한다.
 2.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제7조 (구비서류)

- ① 이력서
- ②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물
- ③ 학력, 경력 및 성적증명서
- ④ 자격인정증서
- ⑤ 신원보증서(당해대사관 발행)

제8조 (급여 및 대우)

- ① 외국인 교원의 급여는 매월 급여일에 정한 바에 따라 한화로 지급한다.
- ② 본교는 필요시 거주지 및 그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도 있다.

제9조 (의무)<삭제 2017.01.24.><전문신설 2017.01.24>

- ① 외국인 교원은 임용기간 중 담당교과목의 강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7.>
- ② 외국인 교원은 매주 4일이상 강의를 해야 하며 매학기 임용계약에 의해 정해진 주당 책임강의시수 만큼 강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04.17.>
- ③ 외국인 교원은 본교 이외의 타 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4.17.>
- ④ 외국인 교원은 정규강의 외에 특별강의 등 본교가 요청하는 기타활동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책임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9.04.17.>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등 법규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1.02.22.>



고 용 계 약 서 EMPLOYMENT CONTRACT

혜전대학교 총장(이하 A라고 칭함)과 (외국인성명)(이하 B라 칭함)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The contract is hereby made between the President of Hyejeon College (herein referred to as A) and (외국인성명) (herein referred to as B) on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1. 직위 : B의 직위는 (직급)으로 한다.<개정 2019. 04.17.>

Position: B will be appointed to the rank of (직급), Hyejeon College.

2. 계약기간 : B의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04.17.>

Contract Period: The period of employment under this contract will be from (년월일) to (년월일)

3. 책임시간 : B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총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본 대학 규정에 따른 초과 강의를 지급한다. 또한 B는 학기 중 혹은 방학기간 중 특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 대학 규정에 따른 초과 강의를 지급한다.<개정 2019.04.17.>

Work-load: B's work will primarily consist of teaching for a 12 regular lecture hours a week. If the total number of teaching hours offered exceeds 12 regular lecture hours a week, additional payment will be made in compliance with the College regulations. B may be required to teach special classes during each term and summer vacation periods. In such a case, additional payment will also be made in compliance with the College regulations.

4. 급 여 : A는 B에게 매월 000만원을 지급한다. B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임용학기 초부터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정급여에서 지연된 일수만큼 공제한다.

Salary: B is paid a monthly salary of 0,000,000 won. If, for private reasons, B is not able to commence teaching from the start of the semester, the deduction will be made from B's monthly salary according to the relevant number of days.



P2.

5. 편의제공 : A는 B에게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숙소를 무료로 제공한다. B가 거주하는 동안 숙소의 관리비 및 가스, 난방유,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의 사용료는 B가 지불한다.

Accommodation: A will provide B with rent-free housing during the contract year. But B will be liable for the cost of maintenance and utilities such as gas, heating oil, electricity, water supply, telephone and so on.

6. 사회보험 : B는 계약기간 동안 관련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개인부담금 해당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Social Insurance: B will be a related social Insurance subscriber, and the individual share to be borne will be deducted from the monthly salary.

7. 복무 : B는 대학교육의 증진에 기여하고, 본 대학의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B는 강의시간을 엄수하고 학과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Obligations: B must observe the pertinent personnel regulations of the College for all faculty and staff, and contribute to its educational enhancement. Also B is required to be present during scheduled class hours, and participate in departmental activities and functions.

8. 겸직제한 : B는 A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근무하지 못하며 본 대학 밖에서 강의 및 개인 교습 등 부업을 가질 수 없다.

Outside Employment: B must not accept pay from any organization other than Hyejeon College without A's permission. B is expected to neither take up off-campus part-time teaching jobs nor give private lessons.

9. 계약해지 : B가 상기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A의 결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B의 급여는 익월부터 지급이 중지된다.

Termination of Contract: A reserves the right to revoke the contract if B is found to be in breach of contract. In this case, no further payment will be made except for the salary due B at the time of the revocation.

[별지서식 제1호]



P3.

10. 재계약 : 재계약은 계약만료일 2달 전에 체결한다. A가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A는 반드시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B에게 통보해야 한다.

Renewal of Contract: The contract may be renewed two months prior to the end of the contract period. If A plans not to renew the contract, A must give B written notice of intent two months prior to the end of the contract period.

A와 B는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상기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아래에 서명한 후 서로가 참고 하기 위해 각자 1통씩 보관한다.

The undersigned agree to the above-stated terms and conditions. For future reference, each party is to keep a copy of the contract.

총장 (성명)
(영문명)
President of Hyejeon College

(직급) (외국인 성명)
(외국인 영문명)
(직급)

날짜
Date

날짜
Date